2022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백영화 연구위원

요 약

2022년에 총 7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해당 개정안들은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 폐지,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제도 개선, 심평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도입,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보험회사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유형 추가,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추가,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22년에 총 7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임[1)]

- 이 중 2건의 개정안(이용우 의원안 및 민형배 의원안)은 정무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처리될 예정임(대안반영폐기)[2)]
  - 이용우 의원안(제2115296호)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 규제와 관련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 증거금 합계액에 관한 한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임
  - 민형배 의원안(제2115467호)은 현행 보험업법의 문언상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비교·공시의 방법과 관련하여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하라는 내용을 추가함
-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 심사 또는 접수 단계에 있으며, 이하에서는 해당 5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음

○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됨(배진교 의원안, 제2115534호)

- 제21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관련하여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는데,[3)] 2022년에도 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된 것임
- 다만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들에서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배진교 의원안은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임

---

1) 한편 2022. 12. 13. 보험업법 개정안 1건이 추가로 발의되었음(박재호 의원안, 제2118909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2022. 12. 14. 현재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게시되지 아니하여 이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R2W1A2R1F2J1W6W2W6B0Q8R4X4C7)
2) 2022. 12. 5. 국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 처리하기로 함
3) 전재수 의원안(의안번호 제2102141호), 고용진 의원안(의안번호 제2104447호), 김병욱 의원안(의안번호 제2109414호), 정청래 의원안(의안번호 제2109937호), 윤창현 의원안(의안번호 제2102552호)

- 즉, 배진교 의원안에서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서(전자적 형태로 제출받는 것이 가능함)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송부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음
-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경우의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임

〈그림 1〉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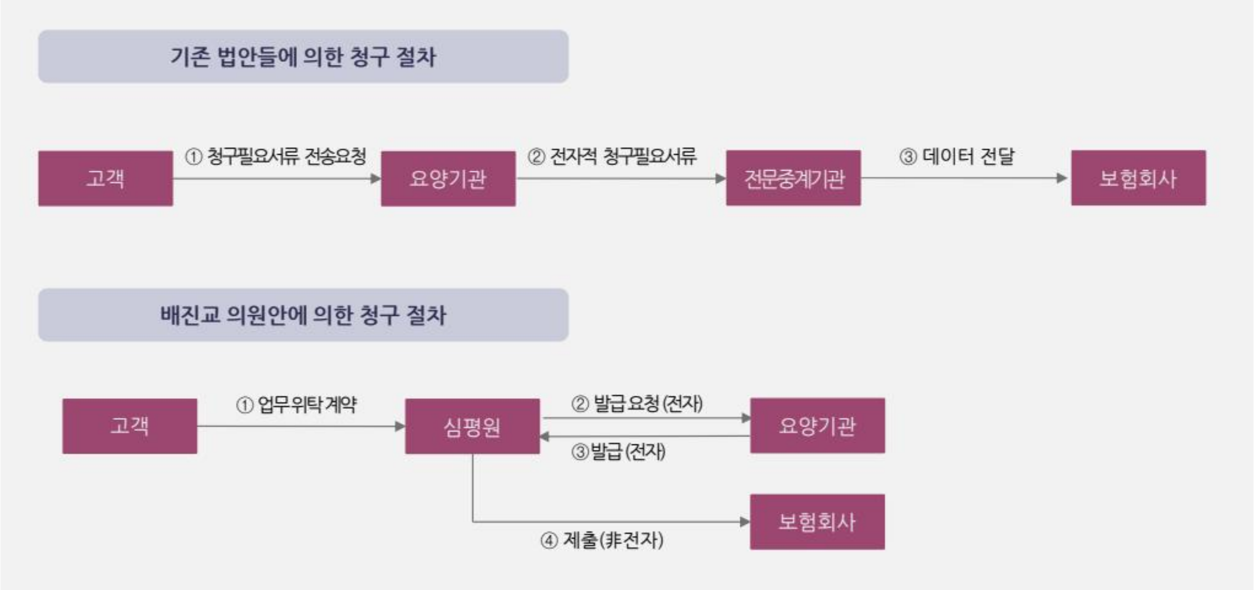

자료: 정무위원회(2022. 9), 「검토보고서」

- 또한 배진교 의원안에서는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보험금 지급 업무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두고 있음
  - 제안 이유에 의하면 해당 조항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 관련 증빙서류를 관리함으로써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 개정안에 대해서는, 연간 약 4억 건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서류를 심평원이 종이로 인쇄하여 오프라인으로 보험회사에 전달할 경우 행정비용 과다, 서류 누락으로 인한 청구 장애, 문서 유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4)]

○ 보장성 상품의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이정문 의원안, 제2115968호)

- 현행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상으로는 보험계약 해지 시의 설명의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제2115969호)에 따라 보장성 상품의 중도해지 시 설명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

4) 정무위원회(2022. 9), 「검토보고서」

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해당 금소법 조항을 준용하는 내용임

- 금소법 개정안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보장성 상품의 중도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①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 내역 및 금전적 손실 발생 여부에 관한 사항, ② 납입유예, 보험료 감액 변경 등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 또는 금전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위 금소법 조항을 준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봄
- 보험계약의 중도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등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해지 시 손실 발생 가능성 등 유의사항에 대해서 실제 해지 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며, 이에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5)]

- 현재도 보험 가입이나 유지 단계에서는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사항이 안내되고 있지만, 실제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보험계약자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음
- 다만 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안된 내용처럼 금소법에서 해지 시 설명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보험업법에서 준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보험업법령 자체에서 규정하는 방식[6)]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 보험회사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행위 유형에 용역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진선미 의원안, 제2116750호)

• 현행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에서는 보험회사가 직·간접으로 대주주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①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②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 개정안은 위 행위 외에도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임

- 현행 보험업법상으로는 금지되는 행위 유형이 자산 거래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체상금 미청구 사례 등을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거래 중에서 ‘용역 거래’만을 추가할 경우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중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음[7)]

---

5) 백영화(2022. 8. 29),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필요성」, 『KIRI 보험법리뷰』, 제18호, 보험연구원
6)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의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지 단계에서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음
7) 정무위원회(2022. 11), 「검토보고서」

○ 보험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보험설계사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황운하 의원안, 제2117889호)

- 현행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업법 또는 금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8]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의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임
  -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도 신설하고자 함
- 보험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험설계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며,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행정절차법상으로도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9]

○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에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됨(윤상현 의원안, 제2118217호)

-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25조 제1항 상호협정의 인가 조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근거하여, 협회 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모든 보험회사 및 공제사(총 20개사)가 위 상호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매년 10만 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2019년 102,456건 → 2020년 104,077건 → 2021년 113,804건)[10]
- 현재는 위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이 아닌 상호협정에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보험업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법상 명시적인 근거 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임
- 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동차사고 관련 분쟁을 공정·신속·용이하게 해결하고 소송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 업무에 대해 보험업법에 명시적으로 근거 조항을 두는 경우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8)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말함
9)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및 제5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10) 과실비율분쟁해결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introduction)

〈표 1〉 2022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번호	의안번호	의안명(대표발의자)	제안일자	주요 내용	진행 상황
1	211529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의원)	2022. 4. 15.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	소관위심사 (대안반영폐기)
2	211546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2022. 5. 2.	보험협회의 보험계약에 관한 비교·공시의 의무화	소관위심사 (대안반영폐기)
3	211553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 의원)	2022. 5. 9.	심평원을 통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도입	소관위심사
4	211596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2022. 6. 15.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소관위심사
5	211675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	2022. 8. 2.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행위 유형 추가	소관위심사
6	211788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2022. 10. 24.	보험설계사 결격 사유 추가	소관위접수
7	2118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	2022. 11. 11.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추가	소관위접수